영동군의회 공고 제2026 - 6호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2. 개정이유

○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시기 규정(안 제8조제2항)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9조의2)

(안 제2조제2항)

4. 의 견 제 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의회규칙 제 호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자문위원회 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장과 부의장 선거) ① (생략)	제8조(의장과 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의한 결선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자문위원회 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